

균일한 항의 절차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 학교와 교육구 자문 위원회 회원, 사립 학교 당국자, 기타 관련 당사자 대상

가든 그로브 통합 교육구는 연방 및 주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구는 균일한 항의 절차(UCP)를 제정하여 불법적 차별, 희롱, 협박과 괴롭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주 혹은 연방 법 위배 제기, 불법적 학생 수수료 부과, 그리고 교육구 재정관리와 책임 방안(LCAP)의 불이행을 주장하는 항의를 조사합니다.

교육구는 주 정부 재정 보조에서 직접 자금을 받거나 주 정부 재정 보조를 받거나 혜택을 받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실제 혹은 인지된 혈통, 나이, 피부색,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국적, 인종 혹은 민족, 종교, 성, 성적 지향, 부모, 임신, 가족 혹은 혼인 여부, 군대 지위 혹은 이런 실제 혹은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개인이나 그룹에 연관을 근거로 한 불법적 차별, 희롱, 협박, 혹은 괴롭힘에 대한 주장을 조사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규정, 타이틀 5, 4600-4671항에 따라 개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는 만일 교육구가 다음 프로그램에 관계된 주 혹은 연방 법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균일한 항의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성인 교육, 방과 후 교육과 안전, 이중 언어 교육, 캘리포니아 상호 지원과 검토, 보상 교육, 통합 범주적 원조, 직업 기술과 기술 훈련, 직업 기술 교육, 육아와 아동 발달, 아동 영양, 교육 내용이 없는 과목, 경제적 영향 원조, 위탁 청소년과 노숙 학생 교육, 모든 학생 성공법과 낙오 아동 방지법, 교육구 재정관리와 책임 방안, 이주자 교육, 체육 교육 시간, 학생 수수료, 모유 수유 학생을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 주 정부 프리스쿨, 흡연 방지 교육, 지역 직업 센터와 프로그램, 특수교육. 항의 절차는 연방 정부 학교 안전 계획과 교육법 234.1항에 따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퀘스처너 (LGBTQ) 리소스에 대한 영역에서 교육구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사용될 것입니다. 이 항목의 불이행에 대한 항의는 행정규정 3119.1에 따라 접수됩니다.

학생 수수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수업이나 활동이 선택이든 필수이든, 혹은 학점을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학교나 수업 등록을 위한 조건 혹은 수업이나 과외 활동 참여 조건으로 학생에게 부과된 수수료.
2. 자물쇠, 개인 사물함, 책, 수업 기구, 악기, 의복, 혹은 기타 자료와 장비를 받기 위해 학생이 내야 하는 보증금이나 기타 비용.
3. 교육 활동에 관련된 자료, 물품, 장비, 혹은 의복을 받기 위해 학생이 해야 하는 구매.

학생 수수료나 LCAP 항의는 만일 항의자가 증거나 항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끄는 정보를 제공하면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해 학생 수수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학생 수수료 항의는 주장하는 위반 사항이 일어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교육법 48853, 48853.3, 48863.5, 49069.5, 51225.1, 51225.2항에 명시한 대로 교육구는 위탁 청소년과 노숙 청소년의 교육 권리에 대한 표준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해당되면 항의 절차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 수수료에 대한 항의는 교육구와/또는 학교장에게 접수합니다. 학생 수수료에 관련된 항의 외의 다른 항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모든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항의서를 보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ecutive Director of K-12 Educational Services
Garden Grove Unified School District
10331 Stanford Avenue, Garden Grove, CA 92840
문의 사항은 (714) 663-6143으로 전화하십시오.

차별, 희롱, 협박, 혹은 괴롭힘을 주장하는 항의는 교육감이나 교육감 피지명자가 접수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주장하는 차별, 희롱, 협박, 혹은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혹은 항의자가 주장하는 차별, 희롱, 협박, 혹은 괴롭힘의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항의서를 접수한 60일 이내에 균일한 항의 절차 담당 직원은 항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교육구의 결정서와 교육구 결정에 대한 항소에 관한 정보를 동봉하여 항의자에게 보냅니다. 이 기간은 항의자의 서면 동의서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항의 조사 책임자는 4621항에서 채택한 교육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마쳐야 합니다.

항의자는 교육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구에 접수했던 항의서 사본과 교육구의 결정 통보 사본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 서면 항소를 접수해서 교육구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 정부 공교육 교육감은 항소가 접수된 6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일 교육구가 항의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교육 교육감이 항소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교육구는 영향을 받은 모든 학생, 학부모, 보호자에게 구제 방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절차 중 어느 조항도 항의자가 가처분, 접근 금지, 혹은 해당하면 교육법 262.3항에 따라 주 혹은 연방 법의 차별, 희롱, 협박, 혹은 괴롭힘 법에서 가능할지도 모르는 기타 구제 방안이나 명령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민사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법 35186항에 따라 교육 자료,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긴급 상황, 교사의 부재나 부적절한 임용, 화장실 상태에 대한 항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의는 행정규정 3119.2에 따라 접수됩니다.

교육구의 균일한 항의 정책 절차 사본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B.P. 3119, A.R. 3119.1)